

의안번호	제 194호
승인년월일	1997. 10.27. (제67회 제1차회의)

승인사항
원안가결

‘96예비비 지출 승인(안)

제출자	보은군수
제안년월일	‘97. 10.25.

기획감사실장 심사



‘96년도 예비비 승인(안)

1. 제 안 사 유

지방 재정운영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
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‘96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
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(단위 : 천원)

회계명	지출사유	지출 결정일	지출결정액	추진부서	비고
일반회계	불입지출승인 조서와 같음		429,586		불입참조

※ 지출건수 : 10건

3. 관 계 법 령

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

(단위 : 원)

지출결정현황				결정액집행상황				지출사유	추진부서	비고
월일	사업명	과목	결정액	계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			
'96. 7.24	벼도열병 긴급 방제 지원	민간경상조 보	37,533,000	37,533,000	37,352,710		180,290	장마와 저온으로 인한 벼 이삭 도열병의 발생이 우려되어 긴급 방제비 지원	산업과	총사업비 125,109,000 도비 37,533,000 군비 87,576,000
'96. 8. 6	분뇨 운송 처리비지원	일반수용비	15,000,000	15,000,000	15,000,000			분뇨처리시설 노후로 완전처리가 않되어 1차처리된 분뇨를 하수 처리장에서 2차처리를 위한 운송비 지원	환경보호과	
'96. 8. 8	수해 피해 응급 복구 사업 장비 임차료	임차료	9,500,000	9,500,000	9,200,000		300,000	'96.6.17~6.18 및 '96.7.21~22 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역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	건설과	
'96. 9.18	손해 배상 공탁금 및 이자	공공요금및 세	33,466,000	33,466,000	20,000,000		13,466,000	손해배상 확인 청구의 소액소에 따른 공탁 명령에 따라공탁금지원	기획감사실	
'96. 9.18	소하천 수해복구	계 시설비 시설부대비	35,587,000 34,828,000 759,000	35,587,000 34,828,000 759,000	35,358,000 34,828,000 530,000		229,000 229,000	'96.6.17~6.18 및 '96.7.21~22 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역 소하천 복구비 지원	건설과	총사업비 71,174,000 도비 35,587,000 군비 35,587,000